

「경제실험 고리움집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에 따라 『경제실험 고리움집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7.

부 천 시 장

1. 공 모 명 : 「경제실험 고리움집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

2. 공모의 목적

-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침체된 골목상권 활력증진을 위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마을경제 활성화 활동 및 창업지원과 연계한 거점공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3. 사업개요

가. 발주기관 : 경기도 부천시

나. 사업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89-2번지

다.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라. 대지면적 : 249.7㎡

마. 건축규모 : 연면적 500㎡ (±5% 범위 내 조정가능), 지상 5층

바.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

사. 설계범위

| 구 분 | 면적(㎡) | 시설 세부내용 |
|-------|-------|--|
| 사무실 | 116 | - 회의 및 교육 공간으로 활용 - 탕비실 구획 |
| 푸드연구실 | 95 | - 제조가공시설(2차 가공이 가능한 시설) - 물청소 가능하도록 바닥 방수 처리 필요 |
| 오픈라운지 | 125 | - 카페, 공유주방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
| 공유사무실 | 44 | - 주민들이 프린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 |
| 공용공간 | 120 | - HALL, 화장실, 계단실, E/V 등 |
| 합 계 | 500 | |

아. 예정 총공사비 : 금2,19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예정 용역금액 : 금131,5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각종 인증비 포함 [에너지효율등급(1++), 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ZEB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등]

※ 사후설계용역 비용 등 포함

차. 과업기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사후설계용역 : 착공일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12개월

4. 설계공모 방법 : 제안공모 방식

5. 참가 자격

가. 응모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여야 하며, 공동응모 시에도 해당 자격을 갖춰야 한다.

나.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소지자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자격정지, 부정당업체 및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 불가

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환경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자. 단, 응모자가 해당 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상기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함. 단, 공동도급시 대표자는 건축사로 함.

라.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분야별 설계적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동도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 1종 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전기 설비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부문(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부문(설비)]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나.의 업체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1) ~ 4)항목별 면허(자격) 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 가능 (대표사는 나항의 업체 이어야 하며, 총 5개사 이내 가능)

마.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상기가항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 공동응모 시 대표자는 상기 가항과 나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고 출자 비율이 과반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응모자는 계약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여야 함

- 1) 공동응모 시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제출 및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국내건축사 중 60%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 1인을 정하여야함)
-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는 것과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도급 하는 것은 불가함
- 4)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음

6. 설계공모 추진일정

| 구 분 | 예정 일정 | 비 고 |
|---------|------------------------------------|--|
| 설계공모 공고 | ‘24. 4. 17.(수) ~ ‘24. 4. 25.(목) | ■ 세움터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부천시 홈페이지 |
| 응모신청 | ‘24. 4. 25.(목) (10:00~17:00) | ■ 장소 : 부천시청 8층 시설공사과 ■ 직접 방문 접수 ■ 12:00~13:00 제외 |
| 질의접수 | ‘24. 4. 26.(금) (09:00~18:00) | ■ 질의서식에 의한 이메일 질의 (1회에 한하며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email : wsy3643@korea.kr |
| 질의답변 | ‘24. 4. 30.(화) | ■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정보공개>행정자료실>도시계획>공공건축물건립) |
| 공모안 접수 | ‘24. 5. 9.(목) (10:00~17:00) | ■ (장소) 부천시청 8층 시설공사과 ■ 직접 방문 접수 ■ 12:00~13:00 제외 |
| 공모안 심사 | ‘24. 5. 17.(금) |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심사 |
| 심사결과 발표 |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 ■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작 개별 통지 (정보공개>행정자료실>도시계획>공공건축물건립) |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내부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공모지침서 및 과업이행요청서로 같음)

7. 설계조건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8. 설계공모도서의 형식과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0. 분야별 배점기준 및 실격/감점기준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1. 입상의 종류 및 보상

가. 당선작 : 기본·실시설계권 및 사후설계권 부여

나. 우수작(1점) : 설계보상비 4,679,000원 지급

다. 가 작(1점) : 설계보상비 3,509,000원 지급

※ 당선작 및 입상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우수한 작품이 없다고 의결할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2. 공모안 반환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나.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기타사항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등을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문에 없는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80호, 2023. 3. 3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 시의 계약 기준에 따름.

14. 문의처

- 부천시 시설공사와 시설정책팀 원소영 주무관(전화 032-625-3624)